

LHCS 10 10 05 50

기계공사 안전관리

공사시방서 개정 이력

구분	주요내용	개정(년.월)	비고
LHCS 10 10 05 50	•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	제정 (2020.12.00)	
LHCS 10 10 05 50	• 2018~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	개정 (2020.12.00)	

목 차

1. 일반사항	1
1.1 적용 범위	1
1.2 참고 기준	1
1.3 용어의 정의	1
1.4 안전관리자 등	1
1.5 안전표지의 부착	1
1.6 안전조치	2
1.7 안전보건장구 사용	3
2. 자재	3
3. 시공	3

1. 일반사항

1.1 적용 범위

- (1)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라 한다)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, 기계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HCS 10 10 25의 해당 사항에 적용한다.

1.2 참고 기준

1.2.1 관련 법규

산업안전보건법

1.2.2 관련 기준

내용 없음

1.3 용어의 정의

- (1) LHCS 10 10 00(1.3)를 따른다.

1.4 안전관리자 등

1.4.1 안전담당자

- (1)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.

- 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
(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(크레인)작성포함)
- ② 보일러(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)의 설치 및 취급작업
 - 가. 전열면적이 14 m² 이하인 온수보일러
 - 나. 전열면적이 3 m² 이하인 증기보일러
 - 다. 전열면적이 30 m² 이하인 관류보일러
 - 라. 몸통 반지름이 750 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,300 mm이하인 증기보일러
- ③ 게이지 압력 98 kPa(=1kgf/cm²)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
- ④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.5 안전표지의 부착

- (1)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, 비상시 조치의 안내,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은 안전,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.

표 1.5-1 안전, 보건 표지판

구 분		용 도 및 부 착 장 소
금지 표지	· 출입금지 표시	·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증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· 자재창고 등
경고 표지	· 매달린 물체 경고 · 감전주의 표시 · 인화성물질 표지판	·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·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·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
기타	· 안전제일 표지판	· 가설사무소 등(건물전후 4개소, 측면 2개소)
	· 화기금지 표지판	· 자재창고, 유류저장소 등
	· 무재해 기록, 안전 수칙, 화재예방수칙 등	· 가설사무소 등
	· 기타 표지판	·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

주)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 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중별(건축, 기계)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6 안전조치

(1)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,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표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표 1.5-1 방호조치

구 분	안 전 조 치	비 고
·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등		
· 전기 용접기	· 누전차단기	
· 교류 아크용접기 등	· 자동전격방지기	
· 압력용기	· 압력방출 장치	
· 보일러	·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	
· 크레인	·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	
·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	· 환기시설 · 송기마스크 등	· 펌프실, 보일러실 및 중간 기계실 : 개소별 급기용1, 배기용1 · 공동구: 환기구마다 배기용 1 · 철재물탱크: 급기용 1
· 기 타	·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공사감독자(건설사업관리자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	

1.7 안전보건장구 사용

(1) LHCS 10 10 25를 따른다.

2. 자재

내용 없음

3. 시공

내용 없음